

의안번호	제 220 호
의 결 연 월 일	2011년 9월 일 (제 303 회)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1년 9월 9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0
----------	-----

제출연월일 : 2011년 9월 9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현실과 불부합한 도민대상 수상부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함께 하는 충북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한 추천 범위를 확대 운영하며
- 시상과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상규정의 삭제로 공직선거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수상대상자의 자격을, 5년이상 도내 거주자 또는 직장근무자에서 타 시도 거주 충북출신인 자까지로 확대(안 제2조)
- 도민대상 수상부문을 11개에서 4개 부문으로 축소(안 제3조)
- 수상대상자 추천권자를 시장·군수에서 시장·군수 및 각급 기관·사회 단체의 장으로 확대(안 제8조)
- 시상시기 조정(안 제10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체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를 “충청북도 도민대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충청북도도민으로서’를 삭제하고, “충청북도도민대상(이하 “대상” 이라 한다)”을 “충청북도 도민대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충청북도 도민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 수상대상자는 충청북도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추천공고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도내의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
  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의 등록기준지가 충청북도인 자

제3조에 단서 “다만,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충북을 크게 빛낸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공로상을 줄 수 있다.”를 삽입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사회발전부문
2. 삶의 질 향상부문
3. 인재양성부문
4. 산업·경제부문

제4조 중 “대상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를 “대상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 하에”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특별공로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 하고 충청북도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5조제1항 중 “도지사가 제3조 규정에 의한”을 “제3조의”로 하고, “5인씩 위촉한”을 “7~9명의”로 하며,

제2항 중 “배수추천”을 “배수 추천”으로 하고, “전문인사중”을 “전문가와

지역의 덕망있는 인사 중”으로 하며,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한”을 “제8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추천마감일후”를 “추천마감 후”로 하며, “종료 후”를 “종료 후에는”으로 하고,  
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제4항 중 “회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하며,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7조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서기 약간명”을 “각 부문별 서기 1명”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매년 9월말까지 시장·군수가 추천하되”를 “시장·군수 및 각급 기관·사회단체의 장이 추천하며”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시상) 대상수상자에게는 도지사가 그 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상장을 수여한다.

제10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대상수상자에 대한 예우) 도지사는 대상수상자가 자긍심을 갖고 도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예우하여야 하며,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중 제목 “실비변상”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충청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도민으로서 충청북도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충청북도도민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충청북도 도민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수상대상자) ① 대상수상대상자는 추천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내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과거 5년 이상 거주 하던 자가 추천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타시도 거주 자로서 도내의 직장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p>	<p>제2조(수상대상자) ① 충청북도 도민대상 (이하 “대상”이라 한다) 수상대상자는 충청 북도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추천공고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도내의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li> <li>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의 등록기준지가 충청북도인 자</li> </ol>
<p>② (생략)</p>	<p>② 한번 대상을 받은 자는 그 수상부문은 물론 다른 부문의 대상도 수상할 수 없다.</p>
<p>제3조(대상부문) 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3조(대상부문) 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충북을 크게 빛낸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공로상을 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술부문</li> <li>2. 문학부문</li> <li>3. 예술부문</li> <li>4. 지역발전부문</li> <li>5. 교육부문</li> <li>6. 체육부문</li> <li>7. 여성부문</li> <li>8. 청소년부문</li> <li>9. 농어민부문</li> <li>10. 산업부문</li> <li>11. 근로부문</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사회발전부문</li> <li>2. 삶의 질 향상부문</li> <li>3. 인재양성부문</li> <li>4. 산업·경제부문</li> </ol>

현행	개정안
<p>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u>대상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u>도지사가 제3조 규정에 의한 수상 부문별로 각 5인씩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위원회 위원은 <u>도의 부문별 관련부서에서 배수추천된 전문인사중 도지사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수상대상자 추천 마감일후 10일 이내에 선정 위촉하며, 대상 시상 종료후 해촉된 것으로 본다.</u></p> <p>③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u>회무를 통할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u></p> <p>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u>을 둔다.</p> <p>제8조(추천 및 심사등) ① (생략)</p> <p>② 수상대상자는 <u>매년 9월말까지 시장·군수가 추천하되, 추천방법 및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u>대상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 하에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 단서의 '특별공로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충청북도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u></p> <p>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u>제3조의 수상 부문별로 각 7~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위원회 위원은 <u>도의 부문별 관련부서에서 배수 추천된 전문가와 지역의 덕망 있는 인사 중 도지사가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상대상자 추천마감 후 10일 이내에 선정 위촉하며, 대상 시상 종료 후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u></p> <p>③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u>위원 중</u>에서 호선한다.</p> <p>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u>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u></p> <p>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간사 1명과 각 부문별 서기 1명</u>을 둔다.</p> <p>제8조(추천 및 심사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수상대상자는 <u>시장·군수 및 각급 기관·사회단체의 장이 추천하며, 추천방법 및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10조(시상) ① 대상은 매년 11월중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p> <p>② 제1항의 부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도지사가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제10조(시상) 대상수상자에게는 도지사가 그 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상장을 수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삭제&gt;</u></p> <p>제10조의1(대상수상자에 대한 예우) 도지사는 대상수상자가 자긍심을 갖고 도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예우하여야 하며,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 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